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693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 ◯◯◯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9,636,360원, 지방교육세 45,927,270원, 가산세 50,244,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제조, 수입,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 8.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유효기간: 2010. 3. 11. ~ 2013. 3. 10.)된 이래 3년 단위로 그 지위가 갱신되었으며, 2022. 3. 10.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었다.

다. 원고가 2010. 3.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당시에는 본점이 '○○시 ○○구 B'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2016. 4. 28. 본점 소재지가 '○○ ○○구 C, D호'로 이전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9. 2. 12. ○○ ○○구 E(도로명 주소로 '○○ ○○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0.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9. 6. 5.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5,740,909,090원으로 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중과세율이 아닌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4호 본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한 일반세율 4%를 적용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여 취득세 229,636,360원, 지방교육세 22,963,630원, 농어촌특별세 11,481,810원 합계 264,081,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6. 4. 28. ○○시에서 ○○○○시로 전입(대도시로 본점 전입) 하면서 중과 제외 업종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2016. 4. 28. 원고의 본점이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7.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9,636,360원 및 이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22,963,63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2,733,990원 합계 275,333,980원, 지방교육세 45,927,27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4,546,790원 합계 50,474,060원, 총 합계 325,808,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조심 2020지37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본문이 규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는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는 취지이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먼저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것)에서 신설된 것인데, 원고의 경우 위 시행령 시행일 이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16. 4. 28. 이미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상태에서 2019. 4. 10. 대도시 내의 다른 곳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원고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론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나) 구 지방세법 제13조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라는 표제 하에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각 호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는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이하 '①사례'라 한다)**, 「②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봄)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이하 '②사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③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하 '③사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는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이라는 표제 하에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①, ②사례에 관한 부동산 취득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법률 조항에 있어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본문·단서 관계 및 위 단서 규정의 문언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의 부동산 '취득'을 같은 항 본문(각 호 포함)의 부동산 '취득'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설령 위 ①, ②, ③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대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즉,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4호에서 그중 하나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 전혀 위임받은 바 없는 부동산 '취득'의 의미를 법률(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의 문언도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단서 자체에서 대도시 전입 이전의 부동산 취득과 대도시 전입 이후(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을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본문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것인지(즉, 원칙으로 돌아가 대도시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때 그 부동산 '취득'의 의미도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는 그 본문에서 일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위 ②사례와 같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서 다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취지[1]라고 해석함이 옳다.

2)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의 본점은 원래 ○○도 ○○시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 결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①사례 및 제2호 소정의 ③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2016. 4. 28. 본점을 위 ○○시에서 ○○ ○○구 C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2019. 4. 10. 같은 ○○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9. 6. 5. 본점을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과거 본점 소재지인 ○○도 ○○시와 그 이후 원고가 본점을 전입한 서울특별시는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즉, 대도시)에 해당한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도 ○○시에서 ○○○○시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규정된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시에서 ○○○○시로 본점을 전입한 2016. 4. 28.로부터 5년 이내인 2019.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정한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규정된 ②사례[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중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 전입 이후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하나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2010. 3. 11. 기술혁신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도 그 지위가 유지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 의하여 부동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에서 신설된 것인데, 위 2017. 12. 29.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바(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19. 4. 10.로서 위 시행일 이후이므로, 원고가 위 시행령 시행일인 2018. 1. 1. 전에 이미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과 상관없이, 일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규정된 ②사례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단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②사례와 같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서 다시 제외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 애초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 따라 대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06

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2852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시 9. ○○시	(생략)	(생략)

끝.